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0. 5.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5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5월 1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7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0년 5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홍성배)

가. 개정이유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려고 함.

나. 주요내용

- (1)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 및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하는 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며, 감면대상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되, 다만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둠(안 제2조)
- (2)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되, 다만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안 제5조의2)
- (3)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안 제8조)
- (4)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2세대 이상으로 변경(안 제13조)
- (5) 현행 “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설립근거를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안 제19조)
- (6)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 및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감면조례 조문 개정(안 제17조, 안 2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제2조에서는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개인과 그 유족 및 그들이 구성한 단체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자동차면허세 감면대상에 직계 존·비속과 그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단서로는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을 요건으로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가시에는 면허세를 추징토록 하며, 제5조의2에서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8조중 지정문화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제13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을 5세대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제17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는 조항변경이고,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는 개정된 법령의 변

경사항으로서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정비한 사항이므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의 결의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0
------------	-----

제출년월일 : 2000. 5. 1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가.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 및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하는 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며, 감면대상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되, 다만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둠(안 제2조)
- 나.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되, 다만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안 제5조의2)
- 다.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안 제8조)
- 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2세대 이상으로 변경(안 제13조)
- 마. 현행 “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설립근거를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안 제19조)
- 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 및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감면조례 조문 개정(안 제17조, 안 20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9조 및 구세감면조례개정준칙안
 - 세정 13415-10239 ('99. 11. 11)
 - 세정 13415-1491 ('99. 12. 18)
 - 세정 13400-232 (2000. 2. 28)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과 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며, “보지 아니한다”를 “보지 아니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 본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5조의2(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과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및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며, “보지 아니한다”를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로 하고, 동조2항제4호 본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8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다.

제17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

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제20조의2(영등포구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로,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를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로 하고, 동조 단서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의제3항의”로 하며, 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로 하고, 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며,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는 2000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 · 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자동차로 <u>보지 아니한다.</u> <u>보지 아니</u> 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1. 2. 3.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를 장애인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동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장애인 등에게 반환되거나 장애인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1. 2. 3. 4. <u>등록을 한</u> 5.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생략)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u>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u> 1~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20조의2(영등포구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영등포구 내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 신용보증재단</p> <p>제20조의2(영등포구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동법 제121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p>